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64
----------	------

2023년 9월 5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3년 8월 14일
다. 회부일 : 2023년 8월 21일
라. 상정일 : 제320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년 9월 5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 가.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원화된 광역 청년센터 공간과 기능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나.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 청년활력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광역청년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15, 2층 ($2,281.25m^2$)
- 공간구성 : 커뮤니티공간,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업무 : 서울광역청년센터 관리 운영 일체
 -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평가
 -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 청년수당, 마음건강 사업 등 서울시 핵심 청년정책 추진 지원
 -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
 -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 시설·물품 등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등
- 소요예산 : 3,766,148천원 ('24년 예산편성안 기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청년시설 관리·운영에 대해 민간의 경험에 기반하여 민간자원과의 적극적 연계 협력을 추진,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3.7.) : 적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동의안 개요

- 이번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 청년공간 기능혁신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¹⁾'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서울 광역청년센터'의 공간과 기능을 통합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활력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운영 업무를 시설형 민간위탁²⁾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9. (생 략)
- ③ (생 략)
- ④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 ⑤ (생 략)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1) [서울 청년공간 기능혁신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 2022.11.11. 미래청년기획단-30274

2) 시설형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

바.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23.12.31.)인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의 위탁사무를 통합하여 '서울광역청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신규로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이번으로 동의안이 제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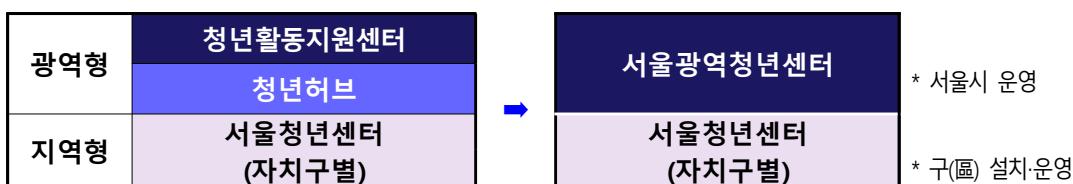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기존 위탁사무를 신규 위탁으로 변경·처리하는 기준
 - ▶ (원칙)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함
 -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① 사무의 변경에 따라 위탁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예산지원형↔자립형, 시설형↔사무형)
 - ②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③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④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⑤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서울시는 현재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 청년공간 기능혁신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22.11월)을 수립하였고, 청년기관을 광역-지역 구조의 '서울광역청년센터'와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2개 유형으로 개편하여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중으로, 이번 동의안은 광역청년센터인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를 '서울광역청년센터'로 통합하여 그 사무운영과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 청년지원기관 개편안

- 기존 3개 유형(광역형 2, 지역형 1) → 2개 유형(광역형 1, 지역형 1)



□ 서울시 광역청년센터(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기본 현황

시설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97길 15, 2층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층
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연면적) : 2,281.25㎡ ○ 재산관리관(건물, 토지)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연면적) : 1,881.84㎡ ○ 재산관리관(건물, 토지) : 서울시 시민협력과
	내부전경(2층)	외부전경(1층)
수용인원	○ 100명	○ 100명
시설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준공일자	○ 2022. 4. 29.	○ 2013. 3.
개관일자	○ 2022. 7. 1. (시설이전 재개관) ※ 최초개관 : 2016. 7. 27.	○ 2013. 4. 11.
직원현황	○ 정원 25명(현원 29명), 상근직	○ 정원 14명(현원 17명), 상근직

□ 서울시 광역청년센터(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운영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청년 활동 지원 센터	인력 (정원)	34명	34명
	조직	2실 6팀	2부 7팀
	예산 (천원)	3,468,138천원	2,956,800천원 (△511,338천원)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 • 온라인고민상담소 운영 • 그룹마음상담 운영 • 자기이해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기술훈련 운영 • 지역센터 운영 지원 • 청년지원매니저 양성 • 청년정책 정보 제공 • 조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조사 • 지역센터 성과관리·평가 • 온라인고민상담소 운영 • 그룹마음상담 운영 • 자기이해진로설계 프로그램 • 영케어러케어링 사업 • 상담지원 전문인력 교육 • 청년정책 정보제공
	인력 (정원)	25명	20명
	조직	2실 6팀	1실 5팀
청년 허브	예산 (천원)	2,575,619천원	2,160,000천원 (△415,619천원)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연계 • 청년활동지원 • 청년문제해결 거점공간 운영 • 국제교류 • 의제 발굴 및 정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세대연계 프로그램 운영 •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 • 취약청년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청년정책 연구 활동 • 글로벌 솔루션랩 운영 • 청년연구·혁신활동가 지원
	인력 (정원)	14명	(전년대비 △6명)
	조직	4팀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년정책 발굴·홍보 • 청년 미래일자리 모델 사업 • 사회적 고립 청년 적합 일자리 개발사업 • 글로벌 청년의제 포럼 및 교류 지원 • 광역 청년공간 사업통합 준비

* 2024년 광역형 청년센터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2023년 회계연도 예산을 22% 감액 편성하여 운영하였음

나. 청년공간 재구조화 추진 경위

(1) 광역청년센터 운영 경과

- 이번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광역청년센터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를 ‘서울광역청년센터’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 ‘청년활동지원센터’는 2016년 ‘청년수당’ 사업 시작과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집행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청년수당’ 대상자가 확대³⁾됨에 따라 다양한 청년 활동 지원 사업과 지역(자치구)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광역청년센터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지역(자치구)을 담당하는 ‘서울청년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는 이를 지원하고 교육·평가하는 역할도 추가하여 광역청년센터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있음
- ‘청년허브’는 ’13.10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를 근거로 ‘청년일자리허브’로 설립되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주 업무로 운영되었으나, ’15.1월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청년허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기능을 하며 실질적인 행정조직이자 정책 집행기관으로 운영되었으나, 청년정책 전담 조직인 ‘청년청’(現 미래청년기획단)이 신설되고 청년정책이 제도화·전문화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모두 축소됨

(2) 광역청년센터 통합 필요성

- 그간 서울시 청년정책의 발전과 함께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시설이 신설된 이후 그 역할과 기능이 변동되면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공간 체계 개편과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미래청년기획단은 2021년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재구조화TF’를 운영하는 등 청년지원기관 재구조화를 추진해

3) 청년수당 대상자 : 3,000명 → ‘18년 5,000명 → ‘20년 30,000명 → ‘21년 이후 20,000명

왔으며, '22.11월 '서울 청년공간 기능혁신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를 통합한 '서울광역청년센터'와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의 광역-지역 구조로 체계를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의 통합은 그간의 이원화된 광역청년센터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해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다. 민간위탁 사무 개요

- 이번 동의안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 중인 사무는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일체로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 국내외 청년네트워크 및 교류지원, 연구조사 등이고, 위탁기간은 '24.1월부터 '26.12월까지 3년임

<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개요 >

- 위치/규모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97길 15, 2층 ($2,281.25\text{m}^2$)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소요예산 : 3,766백만원 ('24년 예산편성안 기준)
- 위치도 및 시설사진



- 공간구성 : 커뮤니티공간, 상담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

위 치	세부공간명	면적(m^2)	용 도
2층	종합상담실(2개실)	36 m^2	· (대관) 개인 및 소규모상담
2층	대회의실	116 m^2	· (대관) 강연 및 회의공간
2층	소회의실(3개실)	75 m^2	· (대관) 회의 및 모임공간
2층	다목적실	61 m^2	· (대관) 실내체육, 운동프로그램
2층	화상면접실(3개실)	24 m^2	· (대관) 화상면접 공간

위 치	세부공간명	면적(㎡)	용 도
2층	스튜디오(2개실)	36 ㎡	· (대관) 방송 촬영 및 송출
2층	청년미니쿡	37 ㎡	· (대관) 음식물 요리 및 섭취
2층	커뮤니티광장	543 ㎡	· 이용객 자유이용 공간
2층	문화카페	66 ㎡	· 이용객 휴식공간 및 취식공간
2층	마음상담실	16 ㎡	· 마음상담 전용상담실
2층	영테크상담실	18 ㎡	· 영테크 전용상담실
2층	스터디룸	20 ㎡	· 개인별 학습공간
2층	폰부스(2개실)	5 ㎡	· 개인 전화 통화 공간
2층	사무실	198 ㎡	· 청년활동지원센터 사무실
2층	대기실	21 ㎡	· 다목적 휴게공간
기타	공용공간	1,009 ㎡	·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
총계		2,281.25 ㎡	

□ 서울광역청년센터 민간위탁 사무 세부내용

분류	연번	세부사무
① 사업운영	1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평가
	2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 사업
	3	청년수당, 마음건강 사업 등 서울시 핵심 청년정책 추진 지원
	4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
	6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② 시설운영	7	서울광역청년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라.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공공부문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며, 민간부문의 특수한 전문성 활용을 통한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민간위탁 도입 시에는 민간 시장의 다양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청년’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청년지원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필요성을 인정되나,
- 민간위탁을 추진 중인 ‘서울광역청년센터’ 사무를 살펴보았을 때, 직접 수행이나 용역 등 다른 사업방식과의 면밀한 비교를 바탕으로 청년정

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고민과 신중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마. 민간위탁 적법성 검토

- 현행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 | |
|--------------------------|--------------------------|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 '23.3.21일 「청년기본법」 이 개정('23.9.22. 시행)되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청년 기본 조례」에서도 청년 지원 기관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은 서울시의 자치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청년기본법」과 「청년 기본 조례」는 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도 명시하고 있어 이번 동의안은 적법하다고 하겠음

「청년기본법」 (2023. 3. 21. 개정, 2023. 9. 22. 시행)

제24조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9. (생 략)
 - ③ (생 략)
- ④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청년기본법」 ‘중앙센터’ 지정요건 충족 여부

- 개정된 「청년기본법」 ('23.10.19. 시행)은 국무총리에게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에 제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서울광역청년센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중앙센터’ 지정 요건을 갖추도록 할 것이고, 이번 동의안의 ‘서울광역청년센터’ 시설 및 인력·조직 등을 살펴볼 때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시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년기본법」 (2023. 7. 18. 개정, 2023. 10. 19. 시행)

제24조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1. ~ 5. (생 략)
- ② (생 략)
- ③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 ⑤ (생 략)
- ⑥ 그 밖에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추진현황 : 2023. 8. 29 법제처 심사완료 ▶ 향후절차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제21조의5(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1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둘 것
 4. 업무를 수행하는 3개 이상의 별도 부서를 둘 것
 5. 최근 3년간 청년지원, 청년발전 또는 청년정책 관련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민간위탁 예산안

-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 위탁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결산자료 비교·분석 및 당해 연도 예산액 등을 기초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세부 항목의 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하되 사업의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⁴⁾를 제외하고는 총 위탁사업비(수탁기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제출된 위탁사업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총 19억 원(구성비 50.4%)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에 비해 예산액($\triangle 23억6백만 원$) 및 총액 대비 비중($\triangle 3.3\%$)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위탁사업비 세부 항목 간 적정 비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과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구조와 수행 방식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됨

□ 서울광역청년센터 예산 구성(안)

구 분	예산액(안)	구성비	증감액 (전년대비)
인 건 비	1,899,132	50.4%	$\triangle 236,620$
운 영 비	457,016	12.1%	$\triangle 142,970$
사 업 비	1,410,000	37.4%	166,318
계	3,766,148	100%	$\triangle 213,272$

4) 불가피한 경우(예시) : 청소 등 성격상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사무

※ 2023회계연도 예산

(단위: 원)

구 分	계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인 건 비	2,135,752	53.7%	1,357,000	56.2%	778,752	49.7%
운 영 비	599,986	15.1%	342,736	14.2%	257,250	16.4%
사 업 비	1,243,682	31.2%	713,682	29.6%	530,000	33.9%
계	3,979,420	100%	2,413,418	100%	1,566,002	100%

(3) 현 광역청년센터 지도점검 결과

- 기존 광역센터인 ‘청년활동지원센터’ 및 ‘청년허브’의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수의계약 기준 미준수’, ‘공정채용 절차 미준수’, ‘제3자 위탁·용역 사전승인 미이행’ 등 법령과 조례, 협약에 맞지 않는 운영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바, 수탁운영 시에는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등 사례교육 및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청년활동지원센터 지도점검 조치결과

구분	점검분야 및 제제조치				조치결과
	총계	회계	전문기술(관리,고용 포함)	운영성과	
2021년*	12	3	8	1	완료
2022년	13	주의 1, 서면경고 1	주의 1	주의 1, 서면경고 2	완료
2023(상반기)	2	주의 5			완료

* 2021년 지도점검 시 별도 제제조치 기준 없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

※ 서면경고사항 : 사업성과미달, 영케어러케어링 사업 관리 미흡

□ 청년허브 지도점검 조치결과

구분	점검분야 및 제제조치				조치결과
	총계	회계	전문기술(관리,고용 포함)	운영성과	
2021년	4		주의 1, 서면경고 1	주의 2	완료
2022년	3	주의 1	주의 2		완료
2023(상반기)	5	주의 3	주의1, 서면경고 1		완료

※ 서면경고사항 : 자산취득시 사전절차 미이행(21), 공정채용 절차 미이행(23)

- 그간의 서울시 청년공간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청년사업과 정책의 특성을 이해하고 높은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희소하여 수탁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던 점을 보았을 때, 향후 수탁기관 선정 기준 수립 시 경쟁력 있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하겠음
- 특히,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 채용 과정과 운영부실 문제로 옴부즈만위원회 감사를 통해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노사문제로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및 개선지도로 센터장을 교체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서울시 청년공간의 대외적 신뢰도와 공공성, 공신력이 훼손되었던바, 신중하고 철저한 적격자심사를 해야 할 것임

(4)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결과

- 현행 「민간위탁 조례」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은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적정’ 판단을 받았으므로 민간위탁 추진 요건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 ① 시장은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1. 위탁사무명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
| 3. 위탁사무내용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 5. 민간위탁기간 | 6. 수탁자선정방식 |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u>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u> |
|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탁사무명	유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심의결과	비고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시설형	신규	-	3년 적정	-

사. 종합 의견

- 이번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2개 광역지원센터('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의 공간과 기능을 「서울광역청년센터」로 통합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23.3.21일 「청년기본법」 개정('23.9.22. 시행)으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원 및 민간위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하겠음
- 다만,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계획 설계와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청년에 대한 이해도와 다양한 경험, 높은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그동안의 청년시설 민간위탁 경험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광역센터의 정착과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기간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 ‘서울청년센터’ 4개소(서초, 강서, 금천, 동대문 오랑)의 위탁 기간은 2년으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종합적 평가가 필요한 점, 광역-지역센터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탁 기간에 차이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을 통일하는 등 일관성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64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원화된 광역 청년센터 공간과 기능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나.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 다. 청년활력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광역청년센터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15, 2층(2,281.25m²)
- 공간구성 : 커뮤니티공간,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업무 : 서울광역청년센터 관리 운영 일체
 -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평가
 -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 청년수당, 마음건강 사업 등 서울시 핵심 청년정책 추진 지원

-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
 -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 시설·물품 등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등
- 소요예산 : 3,766,148천원 ('24년 예산편성안 기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청년시설 관리·운영에 대해 민간의 경험에 기반하여 민간자원과의 적극적 연계 협력을 추진,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3.7.) : 적정

※ 작성자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박세희 (☎2133-4304)